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정 2015. 09. 22.

전부개정 2021. 11. 19.

개정 2021. 12. 30.

개정 2022.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 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하“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 2.“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징계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제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제6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회장은 직원이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처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회장은 직원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감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지 1호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붙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보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중징계등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징계등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징계기준,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사회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징계부가금) ① 제5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채무변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② 위원회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 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16조(의결보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동 징계의결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회장은 징계의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집행한다.

제18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처분등) ① 회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⑤ 피해자는 제4항의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9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21조(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2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광역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제14조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

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가중) ①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 제4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의결서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본다.

제28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회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직원이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29조(심사 또는 재심사)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정·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31조(소청절차) 직원은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32조(징계절차의 중지 등) 회장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 : 7년

나. 감 봉 : 5년

다. 견 책 : 3년

라. 직위해제 : 2년

마. 불문경고 : 1년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 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5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31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6조(훈계 등 처분) ① 회장은 제5조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처분에 대하여 직원 등에게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처분을 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또는 각종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②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7조(훈계 등의 처분사유) ① 훈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위원회의 처분 권고가 있을 때

2. 모든 복무규정 또는 행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지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경우

4.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 5.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 6.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징계가 곤란한 경우
- 7. 그 밖에 직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분장을 회장 명의로 교부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훈계 기록의 말소) 제36조에 따른 훈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운영지원팀장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제3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악하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제1항제2호의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별표 2]와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라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6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 동	경장계·중장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 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말함							

[별표 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 및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 주 운 전 으로 인 적 또는 물 적 해가 있는 교통 사고 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 전 업 무 관 련 직 원 이 음 주 운 전을한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세종특별자치시장에인 체육회 징계및소청 규정」제14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2배
2. 「세종특별자치시장에인 체육회 징계및소청 규정」제14조제1항제2 호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 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 과실이 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 사항		1	2	3	4
· 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7]

징계의 감경기준

제13조제1항, 제21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22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요구서			
1.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서명)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협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협의 당시)	성명			
2. 비위 유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직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4.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정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고의·중과실이 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외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전문가 의견서

사건번호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청인

[별지 제7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 가금 부과결	날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신청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 주문	징계부가금은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청인

[별지 제9호 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불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불임: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1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할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 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 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처 분 권 자

직인

유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직권면직 ☐ 의견
☐ 동의 요구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직권면직 사유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의견을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 동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직원면직

[] 의견

[] 동의

의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2. 의결주문		
3. 이 유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별지 제13호 서식]

징 계 또 는 징 계 부 가 금 처 리 대 장

[illegible]

297mm×420mm

(보존용지 70g/m²)

[별지 제14호 서식]

훈계(주의)장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

[별지 제15호 서식]

훈계(주의) 등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